남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·운영 민간위탁(변경) 동의안

의안 번호	27

제 출 일 : 2026. 8. 31.
제 출 자 : 남양주시장

1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

○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운영)

○ 「남양주시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조례」 제20조(위탁관리)

○ 현재 시설별 관리주체가 상이한 우리 시 파크골프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남양주시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함.

(변경내용 : 위탁시설 4개소 → 11개소, 파크골프장 7개소 추가)

2. 위탁사무 내용

○ 국궁장(천마장) 및 테니스장(다산·별내·퇴계원) 운영 · 관리

○ 파크골프장 운영·관리 (변경_추가)

3. 위탁시설 개요

○ (기존) 국궁장 1개소, 테니스장 3개소

시설명	주요시설	비고
국궁장(천마정)	4개 사로, 28개 사대	운영 중
별내배수지 테니스장	코트 2면	운영 중
용암천 테니스장	코트 2면	운영 예정('27.3.)
다산진건 테니스장	코트 2면	운영 예정('27.3)

○ (변경_추가) 파크골프장 7개소

연번	구분	조성 시기	관리주체		위탁 일정	비고
			기존	변경		
1	별내동 파크골프(9홀)	'14.4	행정복지센터, 읍면동	체육회	'27.1.	운영중
2	조안면 파크골프(9홀)	'22.7				
3	수동면 파크골프(9홀)	'25.11				
4	왕숙천 다목적광장(18홀)	'21.12	도시공사			
5	화도읍 파크골프(18홀)	'26.5	체육회		'26.11.	
6	남양주 다목적광장(18홀)	'27.5	-		'27.5.	조성중
7	진접읍 파크골프(9홀)	'27.7			'27.7.	

4. 민간위탁 기간

○ 위탁일로부터 2028. 12. 31. 까지

※ 기존 시설 위탁 종료 기간 동일(2026. 1. 1.~ 2028. 12. 31. / 3년)

5. 수탁기관 선정방식

○ 현재 우리 시 공공체육시설 4개소(국궁장 1개소, 테니스장 3개소) 위탁운영·관리 중인 남양주시체육회에 파크골프장 7개소 추가 위탁(민간위탁 내용 변경)

6.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

○ 소요예산: 1,350,837천원

○ 산출내역

구분		금액(천원)			비고
		합계	2026년	2027년	
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금	합 계	1,350,837	25,000	1,325,837	
	인건비	822,239	9,772	812,467	
	운영비	528,598	15,228	513,370	

※ 2026년 : 화도파크골프장 관리·운영비 25,000천원

※ 2027년 : 파크골프장 7개소 관리·운영비 1,325,837천원

7.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

구 분	검 토 의 견
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○ 현재 운영·관리 주체가 남양주도시공사, 행정복지센터, 읍·면동으로 다원화 되어있는 사항으로, 민간위탁을 통한 일원화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·운영 예상
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○시민에게 생활체육시설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○독점 이용하려는 협회(클럽) 및 일반 이용자 마찰 발생에 대하여 파크골프협회가 소속된 체육회가 남양주도시공사 및 행정복지센터보다 갈등 중재·조정 유리
경제적 효율성	○관련 분야의 민간 네트워크 활용 및 확보가 용이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이 가능

구 분	검 토 의 견
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○ 관련 분야의 현장경험 및 축적된 전문자원 활용이 가능한 민간에 시설을 위탁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시설 유지관리가 용이
성과 측정의 용이성	○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은 공공체육시설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 시설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별 여건에 맞게 관리·운영을 수행하므로 성과 측정이 용이함
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○ 위탁사업비 집행 현황, 시설 관리 실태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·점검 등을 실시하고, 위탁 기간 만료 전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함
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	○ 체육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, 체육과 밀접한 민간에 시설을 위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유리
종 합 의 견	○ 세 시설(국궁장, 테니스장, 파크골프장) 모두 민간 전문인력과 축적된 경험을 활용해 안정적·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며, 시민 만족도와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추진이 적절하다고 판단됨